

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서비스

<http://www.motie.go.kr>

2013년 10월 1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표준기획과 이기형 과장 (509-7260), 이은영 주무관 (509-7258)

中企, 서비스 KS 인증 부담 줄어든다 !

- 산업부, 사업장마다 받던 인증을 사업자로 완화 -

- 그동안 사업장으로 받던 서비스 KS 인증을 앞으로는 사업자 단위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들의 서비스 KS 인증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.
-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(원장 : 성시헌)은 경제관계장관회의('13.7.4)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, 서비스 업종에 대해 사업자 인증을 도입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(안)을 마련하고, 10월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.
 - 그간, 서비스 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('08년)된 서비스 KS 인증은 사업장별 인증으로,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 마다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,
 -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·단체·개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임.
 - 이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하나의 인증으로 부담을 덜 수 있고, 서비스산업의 특성 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향후, 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에서 그간 제품 KS인증업체가 받던 가점을 서비스업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.

* KS인증제품은 적격심사시 가산제도(신인도점수 0.7점)를 운용하는 반면, KS 인증서비스의 경우 가산제도가 없음.

- 또한, 산업부에서는 불량 KS 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KS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하였음.

-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,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는 시판품조사를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-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한 처분을 그간 KS 인증취소는 인증기관(표준협회 등)이 담당하고, 개선명령과 KS 표시 정지 처분은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,

- 앞으로는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뿐 아니라 개선명령과 KS표시정지, 판매정지 처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.

- 아울러, KS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갱신(3년) 규정도 신설하기로 함.

- 상기 개정안은 이달 중 부처협의를 거쳐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 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.

□ 사후관리체계 정비(안 제20조 및 제21조)

- 제품 조사의 전문성·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수행하는 시판품 조사·현장조사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
-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신속·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KS인증 부여 및 취소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에 개선명령·표시정지·판매정지 처분 권한 부여

□ 서비스 인증 대상 범위 확대(안 제16조)

- 서비스인증 활성화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'사업장'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KS 서비스 인증 대상범위를 '서비스를 제공하는 자'로 확대

□ 인증심사원의 자격 갱신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-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직무교육이수 등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주기적(3년)으로 점검하는 자격갱신 규정 신설

□ 산업표준 조정위원회 설립(안 제4조의2 신설)

- 표준 제·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

□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출연 근거 마련(안 제5조)

-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출연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□ 표준화 실태조사 사업 근거 규정 신설(안 제30조의2 신설)

- 정부에서 표준화 정책 수립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